世宗代의 銅錢流通策

權 仁 赫

目 次

Ⅰ. 序 論
Ⅱ. 用錢論 提起와 鑄錢
1. 用錢論의 提起
2. 銅錢 鑄造
Ⅲ. 銅錢 流通策과 流通狀況
1. 銅錢 興用策의 마련
2. 銅錢 流通狀況
Ⅳ. 結 論

Ⅰ. 序 論

世宗代는 화폐 유통상에서 볼 적에 기존의 화폐 역할을 담당했던 米·布등 대신에 楮貨·銅錢과 같은 진일보의 名目貨幣가 兼用 내지 專用되었던 시대이다. 종전의 사회·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당시 도달한 그 수준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名目貨幣의 유통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世宗代에 채택, 유통된 楮貨流通의 실상을 해명코자 世宗代의 楮貨 流通狀況과 興用策,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의 認識과 그에 따른 楮貨 專用策의 변화 등을 고찰한 바 있었다.[1] 그 중 楮貨 專用策의 변화는 동전 유통문제와 상호 관련되기 때문에 저화 문제만을 언급하고 동전 유통문제는 後日로 미루었다. 본 고는 바로 그 후속 작업이 된다.

世宗代의 동전문제에 관한 전적인 글로서는 宮原兎一의 "朝鮮初期의 銅錢에 대하여"가 있고, 조선 前期의 貨幣制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다룬 李鍾英의 "朝鮮初 貨幣制의 變遷"이 있다. 이외 일반적 개설류로 崔虎鎭, 元裕漢의 글이[2] 있긴 하나 대체로 이

1) 拙稿; "朝鮮初期 貨幣流通研究 : 특히 太宗代 楮貨를 中心으로", 「歷史教育」32, 1982.
拙稿; "世宗代의 楮貨流通策", 「濟州大論文集」17, 1984.

2) 宮原兎一; "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 「朝鮮學報」2, 1951.
李鍾英; "朝鮮初 貨幣制의 變遷", 「人文科學」7, 1962.
崔虎鎭; 「韓國貨幣小史」瑞文堂, 1974.
元裕漢; "朝鮮前期 商工業 : 貨幣流通政策", 「韓國史論」11, 1984.

분야의 연구 현황은 부진한 편이다.

본고는 上記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銅錢 流通始末에 기본적 관점을 두고 用錢論이 太宗代에 제기되어 世宗代에 채택되는 과정과 銅錢 鑄造의 실상, 그리고 그 유통을 강제하기 위한 각종 興用策과 일반 유통계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Ⅱ. 用錢論 提起와 鑄錢

1. 用錢論의 提起

朝鮮時代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자는 논의는 소액거래의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太宗代에 발행된 楮貨가 당초 전망한대로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도리어 유통계의 혼란과 침체를 초래하면서부터 이의 극복을 위한 제반 노력이 전개된 것이다. 그 중 저화의 名目價値가 糙米 2 斗, 五升布 1匹이라는 等價로 정해져[3] 그 미만의 거래엔 하등 소용이 없게 되자

> 價盈匹數之物 則其稅固以楮貨取之 不盈一匹之物 則以紙張取之 甚爲不便 請鑄銅錢頒行 敎曰 此法實恐致訟 承政院先議可否 議及六曹 又議晋山府院君河崙 然後可以擧行[4]

과 같이 동전 주조를 통해 소액거래의 불편을 제거코자 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布貺稅 징수와 관련, 六曹와 承政院이 모두 관여되고 太宗의 특명에 따라 晋山府院君 河崙마저 참여케 되었다. 太宗은 布貺稅 설정 시행의 타당성을 중국 明朝에서 찾고 錢法의 頒行으로 1/30稅 수취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는데, 이에 대해 河崙은

> 然造銅錢必致錢重幣輕 民益不用 請造小楮幣 以今大鈔準一千文 隆殺以十自九百至 一百作九等楮貨 庶便於布貺收稅 且尤利於民間數升買賣矣[5]

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동전 유통은 저화의 不用現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니 만큼, 小楮幣(小鈔)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千文에 해당하는 大鈔(楮貨) 아래에 1백단위로 九百文에서 一百文에 이르는 九等의 저화를 새로이 만들면, 포백세는 물론 소규모의 거래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소저폐를 발행한다 해도 100文에 準하는 저화가 모든 소소한 물건까지 定價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100단위 사이에 물가가 정해졌을 때, 가령 150文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을 때 이에 대한 給價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

3) 「太宗實錄」 卷3, 2年 正月 壬辰
命民庶 以楮貨貿易國庫米 從議政府之請也 楮貨一張 五升布一匹者 直米二斗

4) 「上揭書」 卷29, 15年 6月 壬戌, 柳思納啓

5) 「上揭書」 卷29, 15年 6月 丙子條

게 되어 결국 最少單位의 화폐가 필요하게 된다. 당시 知申事 柳思納은 그 해결책으로 鑄錢行用을 제시했지만 小鈔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6] 이 날 회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그 후 小楮幣 사용을 적극 주장하던 河崙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銅錢 行用을 거론하자 평소 동전에 관심이 많던 太宗은 즉시 戶曹로 하여금 銅錢制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명했다.[7] 이에 戶曹는

臣等謹稽歷代載籍 三代以來 皆用錢幣 或以會子或以交子兼行 今國家旣用楮貨 以革前朝布幣之用 民受其利 然其用使之際 有所未盡 乞依唐開元五銖錢制 鑄朝鮮通寶 與楮貨兼行 以銅一兩鑄成十錢 以百錢當楮貨一張 流行境內 以便國用以濟斯民 私鑄者以私鑄銅錢律論 告者充賞 不用者亦依此律 從之[8]

와 같이 역대 서적을 참고하여 朝鮮通寶를 주조, 저화와 兼行할 것을 제의했다. 나아가 銅 1兩으로 10文을 만들고 100文을 저화 1張에 준하도록 하며 私鑄者·不用者는 大明律에 의거해 科罪하면 國用이 편해지고 民生에 유익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臣僚들은 저화·동전 兼行에 불만을 토로하고 차라리 동전만을 專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不可以兼行 用銅錢則當不用楮貨而興用錢文 昔楮貨始用之時 許令與五升布並行 而民不用楮貨 故中絕其布 示民不用然後 興用楮貨 錢與楮貨之兼行 亦類也[9]

에서처럼 저화·오승포를 겸행할 때 저화의 不用現象이 발생함에 따라 그 시정책의 일환으로 布貨 使用을 포기함으로써 저화만의 興用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太宗은 錢文·楮貨 兼用에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兼行之術이 古典에 실려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행을 서둘렀다.[10] 이때 호조판서 沈溫은 鑄錢原料 收合策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주하여[11]

一. 묵은 陳米豆는 楮貨 時價를 참작, 鑄鐵(주전원료) 매 1근에 저화 3장 가치의 미곡으로 무역케 하고 外方各官도 此例에 의거 무역, 수납토록 한다.

一. 京外 時散各品은 品階에 따라 주전원료를 定數收納한다.

一. 범죄인의 家財 중 國用 외의 것은 雜物로 무역한다.

一. 鑄鐵 3斤을 자진 납부한 자는 2근에 해당하는 錢文을 환급한다.

一. 京外의 범죄인 收贖은 楮貨·鑄鐵로 相半收納한다.

---

6)「太宗實錄」卷 29, 15年 6月 丙子條
7)「上揭書」卷 29, 15年 6月 辛巳條
8)「上揭書」卷 29, 15年 6月 辛巳條
9)「上揭書」卷 29, 15年 6月 壬午, 判書·代言等啓
10)「上揭書」卷 29, 15年 6月 壬午條
11)「上揭書」卷 29, 15年 6月 壬午, 戶曹 判書沈溫 上錢幣興用啓目

둘째, 다섯째 항목을 제외한 전 내용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동전유통 방침이 세워지고 주전원료 수합책이 강구되어 실행에 옮겨지자 이제는 그에 수반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중

各道守令 近因輸納鑄鐵 幷將敗亡寺社銅佛以納 甚爲無謂 自今儻有如此者 許諸僧陳告論罪 [12]

外方守令들이 주전원료를 輸納한다는 이유로 敗亡寺社의 銅佛을 마구 거둬 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화가 장차 無用之物化될 것이라는 의혹이 생겨 시중 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13] 그러나 동전 통용을 보다 근본적으로 저해한 것은 自然災害였다. 당시 자연경제 하에서 天災之變은 인간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가장 절급한 것이었다. 同年 司諫院에서 올린 상소 내용을 보면

況時方大旱 民將飢饉 今聞欲行錢則國家雖欲兼行楮貨 民心搖動 貧民將楮貨買米 而終不得米 因此朝不及夕者必有之 創法施行 實爲未便 請停鑄錢 [14]

과 같이 大旱으로 기근이 예상되고 있어서 동전을 주조해 저화와 兼行한다고 해도 도리어 민심의 동요만 야기시킬 전망이었다. 공연히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때에 錢法을 시행하여 민생에 불편을 초래케 한다면 이는 太宗 자신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실제 태종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치 風浪이 이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잡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15] 결국

上覽疏曰 今當憂旱 中心恍惚 如乘舟入 海遇風濤也 民若受弊 豈可行哉 卽命勿鑄 仍曰後有明君出而行之 [16]

民弊 發生을 이유로 주전을 즉각 정지시키고 훗날 明君이 이를 시행할 것을 기대했다.

2. 銅錢 鑄造

태종때 시행코자 한 錢·楮 兼用策이 재해에 따른 기근 발생과 민심 동요의 예상으로 말미암아 그 시행이 일단 보류된 후 유통계에서는 저화가 계속 法定貨幣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저화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그 가치마저 하락하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世宗은 동4년 10월에

上以楮貨民不興用 欲用銅錢與布幣 使金益精·鄭招 往議三議政 柳廷顯請堅行楮貨 不用者嚴刑 李原請行銅錢 鄭擢請用布幣 [17]

12)「太宗實錄」卷 29, 15年 6月 乙酉, 下旨曰
13)「上揭書」卷 29, 15年 6月 壬午條
14)「上揭書」卷 29, 15年 6月 丙戌, 司諫院 上疏曰
15)「上揭書」卷 29, 15年 6月 丙戌條
16)「上揭書」卷 29, 15年 6月 丙戌條
17)「世宗實錄」卷 18, 4年 10月 庚子, 視事

동전·포폐를 저화 대신 통용코자 구상하였다. 이에 대한 三議政의 견해는 저화의 지속적 통용, 동전의 行用, 혹은 布幣 사용으로 각기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동5년 9월에 錢·楮 兼行으로 낙착되었다.[18]

이때 호조는 태종 15년에 건의한 내용[19]과 같이

銅錢乃中國歷代所用 請以唐開元錢爲準 積十錢重一兩 文曰朝鮮通寶 民納銅一斤者 例給錢一百六十文 令司贍署掌之 私鑄者依律科罪 從之[20]

唐의 개원통보에 준해 10文의 무게를 1兩으로 정하고 이름은 조선통보라 하며 동1근 납부자에게는 전문 100文을 지급하되 사섬서가 이를 관장하며 私鑄者는 大明律에 의거, 科罪하자고 해 동전 통용을 위한 첫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전원료인 銅·鐵은 工曹가 專掌하고 濟用監의 正布는 倭客의 銅등을 매입토록 조치했다.[21] 당시 倭客이 進獻하거나 私齎한 銅·丹木은 모두 상송하여[22] 주전원료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公貿易 외에도

日本國客人私物 已令市裏人貿易 然市裏人財物有限 難以畢易 請其銅鐵丹木胡椒大刀等物 令工曹軍器監義盈庫等各司貿易 從之[23]

市人에 의한 私貿易도 전개되어 일본 동 수입의 한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 자본 규모가 수입물량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아 工曹·軍器監·義盈庫 등이 개입, 주전에 필요한 원료들을 구입하고 또한 外方의 廢寺器皿을 수합해[24] 주전원료 공급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今鑄錢爐冶三十 每一日所用銅一百三十五斤 一月所用四千五十斤 一年則四萬八千六十斤 今見在銅四千十一斤 一月所用亦且不足 除無銅咸吉道外 請令留後司及各道連續上納 從之[25]

와 같이 爐冶 30所의 1일 所要銅이 135斤이므로 1개월이면 4,050斤이 필요하나 保有銅은 4,011斤에 불과해 심각한 원료난에 봉착했다. 그래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도에 연속적인 銅 輸納을 명해 두달 뒤에는 많은 양을 확보케 되었다.[26]

한편 鑄錢量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해 行護軍 白環과 戶曹의 건의에 따라 경상도의 蔚山鎭과 合浦鎭 그리고 전라도의 內廂에 鑄錢所를 신설하고[27] 鑄錢事目을 편성, 운영하였는데[28]

18)「世宗實錄」卷 21, 5年 9月 甲午條
19) 註) 8 참조
20)「上揭書」卷 21, 5年 9月 甲午, 戶曹啓
21)「上揭書」卷 21, 5年 9月 甲辰, 戶曹啓
鑄鐵銅鐵工曹專掌 以濟用監正布買於倭客 以爲恒式
22)「上揭書」卷 20, 5年 6月 乙亥條
23)「上揭書」卷 23, 6年 1月 辛丑, 戶曹啓
24)「上揭書」卷 22, 5年 10月 丁巳條. 同6年 2月 壬戌條, 同 6年 3月 壬辰條
25)「上揭書」卷 23, 6年 1月 乙未, 戶曹據司贍署呈啓
26)「上揭書」卷 23, 6年 3月 丙申條
27)「上揭書」卷 23, 6年 2月 癸丑條
28)「上揭書」卷 23, 6年 2月 壬戌, 戶曹啓 慶尙全羅道 鑄錢事目

그 내용은

一. 주전원료는 각도 破亡寺社의 銅器皿으로 충당한다.

一. 鑄錢炭은 각도 內廂 근처에 있는 各浦 營番船軍을 減數해 그들을 使役 備辦한다.

一. 監鑄宮은 時散을 물론하고 巧性者 1명을 차출, 京中의 熟練工 1명을 인솔하여 外方錢匠을 教習한다.

一. 기타 사항은 監鑄官과 都節制使가 논의, 監司에 보고 行移한다.

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監鑄官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고 楊根 鑄錢所에도 別監을 보냈다.[29]

그러나 당국이 구상한 錢·楮 兼行策은 사섬서 제조의 啓禀과 같이

楮貨本非民樂用之物 今因銅錢兼用之令 楮貨尤不行用 宜當速頒銅錢 以定民志[30]

기존의 교환수단인 저화 지위를 더욱 하락시켜 유통계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유통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동전을 속히 頒行하는 것이라고 간주해 鑄錢可行條件을 마련,[31]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一. 癸卯年(세종 5년) 11월에서 今 7월(세종 6년)까지의 주전량이 4,570관에 불과함으로 연말까지 盡力한다 해도 1만관에 미흡할 것임. 楊根分署의 鑄錢匠 30명 외에 30명을 증원하고 助役人도 더욱 늘리되 동전 周足時까지 軍器監 月課를 정지시키며, 柴炭有餘處에는 爐冶 50所를 加置, 鑄錢匠 50명, 助役人 100명을 두고, 本監官員과 司贍署 提擧·別坐가 같이 감독토록 한다. 그리고 경상·전라도도 月課 軍器를 정지시키고 爐冶를 加設, 주전토록 한다.

一. 주전량이 많아도 鍊正功役이 힘들므로 兩面 鍊正 외의 孔方外圓에 힘쓰도록 하며 1文의 무게는 1分이 되도록 한다. 사섬서·경상도·전라도 주전소의 日課量을 정해 上手는 2천문, 中手 1천 6백문, 下手 1천 3백문으로 한다.

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원료의 충분한 확보 문제였다. 즉

將司贍寺已鑄錢四千五百七十八貫 計用銅三萬五千七百六十五斤 以此例之 則一萬貫所鑄銅七萬八千八十八斤 十萬貫所鑄銅(中略) 今考現在銅 不過一萬斤 雖加設爐冶七十所 無銅加鑄[32]

에 나타난 바처럼 동전 4,578관의 소요동이 35,765근으로서 1만관을 주조하려면 78,088근의 동이 필요하다. 在庫銅이 1만근에 불과해 爐冶 70所를 加置한다 해도 주전량을 신속히 증대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斂銅合行事目을 마련해[33]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

29) 「世宗實錄」 卷 23, 6年 2月 壬申條
30) 「上揭書」 卷 25, 6年 7月 乙亥, 司贍署提調啓
31) 同 上
32) 「上揭書」 卷 25, 8月 丁未, 戶曹啓
33) 同 上

다. 그 내용은

一. 京中 各司에 있는 銅 9만 1천근 중 3만근과 常鐵·爐甘石을 주전소에 보낸다.

一. 時散各品으로부터 差等收銅하되 所鑄錢을 量宜分給한다.

一. 京外 公處의 銅器를 定限收納한다.

一. 京外 犯罪收贖者는 銅으로 並贖한다.

一. 京外 經師·巫女業稅는 銅으로 差等收納한다.

一. 歷代 銅錢으로 散在民間者는 일체 收納한다.

一. 焰錢者는 盜鑄錢으로 처벌한다.

로서 당시 斂銅이 가능한 방안을 모두 망라하였다. 그 중 時散各品으로부터 差等收銅하는 방안과 經師·巫女로부터 수납하는 斂銅策은 추후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었고[34] 소관부서는

京外各品所納鑄錢銅於司贍一署 難以監收 請分於事歇各司 定日收納 其定日不納者 京外相推不納者倍徵 從之[35]

와 같이 사섬서와 사무가 歇한 各司가 일정 기한 내에 수납토록 조치했다. 한편 주전원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爐甘石의 채취를 허용하고[36] 銅鐵産地를 개발하여

銅鐵産處試驗 全羅道龍潭銅里鄕役軍人二十名 七月鼓鑄銅十一兩 慶尙道金海沙邑橋軍人三十名 十三日鼓鑄十九兩 昌原北背洞軍人三十名 十五日鼓鑄五十七兩 帶銅生鉛石一斗七升 鼓鑄鉛五十八兩[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도 龍潭, 경상도 金海와 昌原에서 銅 등의 원료를 試取하였다.

국가의 이러한 집중적 노력은 동 6년 연말에 10,921관을,[38] 이듬해 정월에는 12,537관의 동전을 확보케 해 그해 初番祿 頒賜 때에 150관의 동전을 지출하고 이어 濟用監에 100관, 內資·內贍·禮賓寺와 仁壽·仁順府에 각 10관, 각도 및 留後司에 100관씩 급여케 했다.[39] 또한

今收納時散各品品銅及巫女業中銅五萬四百七十一斤內 以定日不及 倍納四百七十六斤 然時鑄錢文數少 請品銅每一斤價給錢五十文 其倍納銅價勿給 從之[40]

와 같이 時散各品과 巫女들로부터 定限期日 내에 수납한 49,995근에 대해서 매 1근 당 50

34) 「世宗實錄」 卷 25, 8月 庚戌條
35) 「上揭書」 卷 25, 6年 8月 乙卯, 戶曹啓
36) 「上揭書」 卷 23, 6年 6月 戊寅, 傳旨工曹 勿禁爐甘石採取
37) 「上揭書」 卷 26, 6年 11月 丁亥條
38) 「上揭書」 卷 26, 6年 12月 丙午, 京中及各道所鑄錢一萬九百二十一貫
39) 「上揭書」 卷 27, 7年 1月 戊子條
40) 同 上

문을 지급해 총 2백 49만 9천 750문(약 2,500관)을 給錢했다. 본래 동 1근 납부자에게는 전문 160문을 지급토록 규정했으나[41] 중간에 150문으로 조정하고 이제는 造出量의 적음을 이유로 50문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실제 동전 10문의 소요 동은 1량으로서[42] 매 1근의 발행량은 160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大明律曰 軍民之家 應有廢銅 並聽赴官中賣 每斤給價銅錢一百五十文 臣等窃意大明律時王之制 且得輕重之宜 乞依律文以銅錢一百五十文 准銅一斤 從之[43]

에서 보는 바처럼 大明律에 기록된 동 1근 납부자에 대한 150문 給價를 중시해 당초 160문의 給價原則을 150문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아가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50문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 1근으로서 전문 160문을 발행한다는 원칙이 기술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동전 150문의 무게가 동 1근보다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 즉 素材價보다 名目價가 낮게 책정된 셈이어서 결국

曾奉教旨 以銅錢一百五十文 准銅一斤 然新鑄錢文 輕重不一 一百五十文之重 重於一斤 且鑄造之費不細 而以一百五十文 准銅一斤 則錢貨過輕 請以一百三十文准一斤 從之[44]

와 같이 동전 130문을 동 1근가에 준하도록 하였다. 銅에 대한 錢文 等價를 일단락 짓자 동 7년 2월에 동전 통용에 들어갔다.[45]

Ⅲ. 銅錢 流通策과 流通狀況

1. 銅錢 興用策의 마련

1) 銅錢 不用者 처벌

동전을 유통시키기에 앞서 호조는 동전 不用者에 대한 4개항의 糾察條件을 마련해[46] 전문의 흥용을 도모하였다. 그 내용은

41) 註 20) 참조

42) 註 8) 의 銅 1兩으로 10錢을 鑄成한다는 내용, 註 20) 의 동전 10錢의 무게를 동 1량으로 한다는 기사, 그리고 註 31) 의 1錢무게를 동 1分에 준한다는 표현은 가치단위의 錢(貫, 兩, 錢, 文)이 아니라 단순한 동전 갯수를 의미한다. 그래야만 동 1근 무게로 동전 160문 혹은 150문에 준한다는 내용이 이해된다.

43) 「世宗實錄」 卷 26, 6年 10月 丁未, 戶曹啓

44) 「上揭書」 卷 27, 7年 2月 戊申, 戶曹啓

45) 「上揭書」 卷 27, 7年 2月 戊午條

46) 「上揭書」 卷 27, 7年 2月 戊申, 戶曹啓

一. 富商大賈·諸色工匠이 違法, 米·豆·布貨로 互相貿易하고 동전을 不用하면 犯法의 輕重에 따라 重者는 典刑 廣示하고 輕者는 杖1백과 身充水軍, 家產沒官하며 有能告捕者는 犯人家產의 1/2을 充賞한다.

一. 동전의 輕重과 錢面의 不鍊, 字劃 不明을 빙자해 多般揀擇하는 자는 王旨不從으로 論한다.

一. 京中 五部는 5家를 比로 삼아서 諸色工匠家·雜物買賣者가 楮貨·銅錢을 不用하고 몰래 米·布로서 私相貿易하면 隨卽捕告케 하고 그 사실을 숨겨 고발치 않으면 比隣人을 並坐하며 有能捕告者는 犯人家產의 1/2을 充賞하고 升斗以下의 米·豆 貿易은 不在此限한다.

一. 漢城府·留後司·京市署는 上項 犯人을 窮推하되 買賣者를 모두 論罪하며 不用心奉行者는 사헌부로 하여금 糾理케 하되 王旨不從으로 論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升·斗 이하의 米·豆 貿易을 제외한 모든 교역에서 저화·동전만의 통용을 강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동7년4월 銅錢 專用 이후 더욱 강화되어

市裏人若不用錢文 以米布雜物交相貿易者 請依壬寅年例 提調坐本署直行囚禁 廣示警衆 從之[47]

전문을 불용하고 米·布·雜物로 교역한 자는 구속, 廣示警衆한다거나

時領議敦寧柳廷顯 以京市提調坐于市肆小有不用錢文者 雖犯一二升 嚴刑酷罰 籍沒家產[48]

에서와 같이 1·2升米의 교역 시에도 不用錢文 시에는 엄벌과 籍沒家產하는 강력한 제재를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빈곤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통곡과 자살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동년 6월 斗升이하의 雜物交易을 秋成 전까지 허용한다는 잠정적 조치와[49] 나아가서는 무기한의 허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50] 이 과정에서 錢價 高下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한결같이 民間 市直에 방임하는 시책도 펼쳤는데 이는 동7년 5월 錢1文=米1升이라는 法定等價를[51] 파기하는 것으로

前者爾曹 以錢一文准米1升 其他物價推移加減買賣 已受教旨 然物價隨時貴賤各異 而一槩定價 實爲未便 其錢價米布雜物 一從民間時直[52]

에서와 같이 상품의 속성과 시간적 차이에 따른 필연적 등락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제

47)「世宗實錄」卷28, 7年 6月 己酉, 戶曹據京市署呈啓
48)「上揭書」卷28, 7年 6月 甲寅條
49)「上揭書」卷28, 7年 6月 乙卯條,同7年 8月 己丑條에 의하면 米1.5斗 거래가 不用錢文罪로 처벌받고 있어 斗升의 한계가 1斗이하인 것으로 사료된다.
50)「上揭書」卷29, 7年 8月 壬辰條, 同11年 10月 壬午條에서 재확인 된다.
51)「上揭書」卷28, 7年 5月 戊寅條
52)「上揭書」卷28, 7年 6月 甲寅, 傳旨戶曹

방침은 당시의 민간경제가 소액·소량거래에 기저하고 있고 자연경제 하에서의 民生이 극히 불안했다는데에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동전 불용죄에 해당하는 자들은 富商大賈·姦猾之徒가 아닌 빈곤자들이 대부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53]

2) 收贖法 改定

종래 범죄 수속으로 이용되었던 저화는 錢·楮 兼行法이 시행되면서부터 錢文·楮貨의 相半收納으로 변경되고[54] 銅錢 專用策이 채택된 이후에는

在先贖罪 以錢文楮貨相半收納 今改全用錢文 自今銅及錢文中 從自願依定納 從之[55]

銅·錢文 중에서 자원수납토록 하였다. 동전 불용죄로 輕者에 가해지는 杖1백, 身充水軍의 贖錢은 전문8관으로서[56] 米20斗에 해당되는데[57] 당시 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빈곤자에겐 커다란 고역이었다. 더우기 주전량이 유족치 못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錢貴現象은 전문 수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錢幣之法 歷代行之 然錢不自行 必因時權法而後興行 今也錢幣至賤 贖罪者有願以布代納者 若增其錢價而優納之 則人知錢價之重 而錢自興用矣[58]

布代納을 요청케끔 만들었다. 그러나 동전 유통을 기도한 세종은 權法에 의한 전문 흥행을 강조하고 이 기회에 錢價를 올려서 布의 優納을 도모한다면 전문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변할 것이고 아울러 동전 유통이 순조로와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동일 현상이 되풀이 되어 민원이 다시 발생하자 수속법에 대한 錢·布 相半收納, 納布 1/3이 제기되어[59]

錢之在民間者不多 今京外贖罪 悉徵以錢 民不易辦 不無怨咨 今後京外贖罪者四分之一 許納以布 於是刑曹啓以銅錢三百文 准正布一匹 其綿布綿紬 並從正布折價 從之[60]

에서처럼 수속액의 1/4을 納布로 개정하고 동전 300문을 正布1匹에 준하도록 했다. 그후 동27년에 동전 불용현상이 심화되고 楮貨 復用策이 시행됨에 따라 錢·布 收納은 폐지되고 저화·동전 중 聽願收納으로 변경되었다.[61]

3) 徵稅의 金納化

동전 유통의 확대 노력으로서 징세의 금납화를 열거할 수 있겠다. 동7년 5월 各司奴婢

53) 「世宗實錄」 卷30, 7年 10月 癸酉條
54) 「上揭書」 卷27, 7年 3月 己卯條
55) 「上揭書」 卷28, 7年 4月 丙辰, 戶曹啓
56) 「上揭書」 卷29, 7年 8月 己丑條
57) 「上揭書」 卷29, 7年 8月 丙戌條에 의하면 米1升價는 錢千文이다.
58) 「上揭書」 卷59, 15年 1月 壬申, 上又曰
59) 「上揭書」 卷79, 19年 12月 丙寅條
60) 同 上
61) 「上揭書」 卷110 27年 12月 癸卯條

身貢價와 巫女業中稅의 錢納을 시작으로 해서[62] 동8월 錢文收納條件을[63] 마련해

一. 諸色匠人 月稅는 上等이 저화3장, 中等2장, 下等1장, 行商은 2장, 坐賈 1장이었는데 이제 저화1장을 米1斗로 準하고 米1升은 錢4文으로 해 工匠 上等 1명으로부터 120文, 中等 80文, 下等 40文, 行商은 80文, 坐賈 40文으로 定式 收納한다.

一. 行廊稅는 每1間에 春·秋 兩等으로 각기 저화 1장을 수납했는데 각기 120문으로 수납한다.

一. 新參馬價稅는 종전에 저화 20장이었는데 이제 저화 1장을 錢1文에 準해 20文만 받는다면 너무 輕함으로 1장을 米1斗, 米1升을 錢4文으로 해 800文으로 징수한다.

上項 各稅 錢文數는 米價에 따라 加減 징수한다.

라한 바와 같이 工匠稅, 行商稅, 坐賈稅, 新參馬價稅등의 錢納과 逃亡奴婢役價,[64] 助役奴子의 不供日役에[65] 대한 전문 수납 그리고 未納 還上의 自願納錢을 시행하여 전문 흥용을 꾀했다.[66] 한편 동전 지출면에서는

外方上納狸狐皮每一領給價楮貨十二張 山獺皮每一領六張(中略) 以各道會計付楮貨 及新頒銅錢支給 如其不足 以今年神稅布及官鹽 和賣布貨 准各道時價計給 從之[67]

외방의 상납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楮貨·錢文 給價로 동전 유통의 길을 확대하고 동20년 7월 四孟朔 頒祿을 제정할 시에는 종전의 初番 반록 때에 지급했던 동전 900문을 春等 時에 급여함으로서 錢文 支出을 재확인 하였다.[68]

이처럼 전문 흥용을 위한 부분적 금납화와 세출면에서의 현물·동전 등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간에서는

各司奴婢之貢 請以錢收納 上曰 奴婢多而銅錢少 督納所無之物 不亦難乎 更議以啓[69]

에서처럼 주전량의 미흡으로 인해 奴婢身貢의 錢納도 제대로 이행치 못할 형편이었고 동전 흥용에 앞장서야 할 官衙가 먼저 布貨·雜物 등으로 수납함으로써 전문 유통은 사실상 포기된 거와 다름없었다.[70] 저화 복용 후 이 부분은 楮貨·銅錢 收納으로 바뀌고 所收錢文은 濟

62)「世宗實錄」 卷28, 7年 6月 壬子條
63)「上揭書」 卷29, 7年 8月 丙戌, 戶曹啓
64)「上揭書」 卷31, 8年 1月 甲寅條
65)「上揭書」 卷38, 9年 12月 丁卯條
66)「上揭書」 卷52, 13年 4月 癸卯, 傳旨戶曹
甲辰年(세종6)以上 還上未納者 許以銅錢代納 依京市准差輕酌定以納
67)「上揭書」 卷28, 7年 4月 丁卯, 戶曹啓
68)「上揭書」 卷82, 20年 7月 癸卯條
69)「上揭書」 卷56, 14年 6月 壬辰, 戶曹啓
70)「上揭書」 卷110, 27年 10月 壬子條

用監에 보내져 퇴장되고 만다.[71]

4) 和賣策 施行

동전 발행 후 전문이 官府에만 이용되고 민간에서는 유행되지 못하자 화매책을 통한 전문 유통을 計劃하게 된다.[72] 즉 민간의 銅·雜物과 관아의 동전을 교역토록 한 것이다. 이는 전문의 斂散과 물가조절이란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自古錢與物價 相爲消長 故貴散賤收 以備水旱 以便民生 近年以來 錢文斂散之法未盡 因此物貴而錢賤 民不樂用 自今將各司陳米豆布貨魚藿等物 以時直和賣收錢 以便民生 其民間錢貴則許從民願 以雜物納官易錢 不過二萬貫 從之[73]

에서와 같이 물가가 오를 때 各司의 현물을 방출하여 收錢 和賣한다거나 반대로 錢價가 오를 때 民間 雜物과 官庫錢을 교역케 하면 민생 안정과 전문의 원활한 유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매가 일시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이 과정이 끝나면 동전이 불용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各司 陳穀을 매월 1백석씩 방출하여 10년간 화매하면 동전의 원활한 유통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豊儲倉, 軍資監, 內資·內贍寺·仁順·仁壽府의 陳穀을 화매키로 결정하게 된다.[74] 화매책이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동전 흥용의 한 방책이고 백성의 입장에선 곡물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今和賣收銅錢 非欲取利於民 專爲興用也 官吏等不顧此意 或定數收錢 或收納後 不卽給米 因此人不樂於貿易[75]

관리들이 定數收錢하고 혹은 전문 수납 후에도 즉시 給米하지 않는 현상과 노약자는 온종일 기다려도 1升米도 구입못하는 폐단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하게 되었다. 결국 和賣所를 세 곳에 설치하여 40石씩 방출키로 하고 隔3·4일 혹은 隔10여일로 불시에 화매토록 조치했다.[76] 특히 재해에 따른 穀貴現象이 초래되었을 때는 和賣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爭納現象마저 전개될 정도였다.[77] 그렇지만 이 시책은 본래 계획한 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어느 시기인가부터 일시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78] 전

71) 「世宗實錄」 卷 110, 27年 12月 癸卯條
72) 「上揭書」 卷 27, 7年 2月 癸亥, 戶曹啓
今所鑄銅錢 只用於公 不行於民間未便 請令民將銅及雜物 納官以買 從之
73) 「上揭書」 卷 34, 8年 11月 庚寅, 戶曹啓
74) 「上揭書」 卷 38, 9年 10月 丙寅條
75) 「上揭書」 卷 51, 13年 3月 戊寅, 傳旨
76) 「上揭書」 卷 51, 13年 3月 庚寅條
77) 「上揭書」 卷 64, 16年 6月 辛未條
78) 「上揭書」 卷 110, 27年 10月 壬子, (李) 季甸又上書曰
京中暫有和賣之事 則一日之間 錢價甚高

문 불용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2. 銅錢 流通狀況

동전 始用 후, 백성들의 표정은 한마디로 두려움에 차있었다. 동전 흥용을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책이 현물교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데에 따른 후유증이었던 것이다.[79] 그래서 민간에서의 전문 유통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고 그 가치 역시 米 1升=錢 3文이라는 錢價의 하락현상을 보였다.[80] 錢文 頒布 時 목면 1필 等價가 전문 200여문이었던 것이

錢文頒布之初 市裏木綿一匹直 銅錢二百餘文 今木綿一匹三百文 或四百文 日增月加 此必民間錢文頗多 因此物價騰踊 將至難禁 司贍署錢文和賣 姑令停寢 從之[81]

에서처럼 목면 1필=전 3·400문으로 전가의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다음 달에는 6·700문으로 더욱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당시 위정자들은 전가 폭락요인을 민간 散在錢文의 과다로 인식하여 사섬서의 錢文和賣를 중지시킨다거나 혹은 錢法을 혁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민간의 전문 흥용을 혼란시켰다. 당시 頒布 錢文數는

銅錢民不樂用 故賤六七升綿布一匹直 錢六七百文 此無他 數更其法之弊也 戶曹參判睦進恭對曰 錢賤而民不樂用者 以其民間散錢之多也 且議事大臣之過也 大臣議事 請罷錢法者多矣 由是立法未定 民心疑惑 不肯興用 願立經久之法 使民知錢文之不可不用 以固其心 則民興用矣 上曰 卿言是矣 然官出錢數千貫 豈其多哉[82]

와 같이 수천관에 불과해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동전의 조기 흥용을 위한 각종 규제행위가 민간 교역의 침체를 불러 일으켰고 특히 升斗이하의 소량거래에 대한 전문사용 강제가 그 불용현상을 초래하고 나아가 민생마저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에 동 7년 8월 雜物貿易 禁止令을 정파하고[83] 不用銅錢罪로 구속된 獨子들을 석방하는 등[84] 이제까지의 강경책을 완화하여 전문 유통의 실제를 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구습에 연연하여 用錢을 계속 厭惡함으로써[85] 銅錢制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

79) 「世宗實錄」 卷27, 7年 2月 戊午
始用銅錢 自是小民畏法 以布貨易米者絕無 民之艱食 兆於此矣
80) 「上揭書」 卷28, 7年 5月 丁丑條
81) 「上揭書」 卷28, 7年 6月 甲寅, 戶曹啓
82) 「上揭書」 卷29, 7年 7月 乙酉, 上曰
83) 「上揭書」 卷29, 7年 8月 壬辰條
84) 「上揭書」 卷29, 7年 8月 癸巳條
85) 「上揭書」 卷30, 7年 12月 癸酉條, 同8年 2月 庚寅條

錢幣非新法 自古通行 乃爲便民之用也 今民皆厭之(中略) 其初立法 不如是之甚也 今卿等亦言之 已命弛之 許以自願雜物用之 若錢幣不興用 則不若不用之爲愈也 安純對曰 錢幣不可不用 夫法之行 當自貴者始 今大臣之家 專尙用錢 庶民化之而興用 上曰 錢法乃聖人所立 予今未見有益於公 亦未見有益於私也[86]

에서와 같이 전문이 흥용되지 못하면 차라리 不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그리고 錢法이 公·私에 유익됨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세종의 비관적 태도, 그리고 이를 행함에 있어 大臣之家로부터 用錢하면 서민에 이르기까지 흥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1승=전 7·8문이라는 등가가 형성되고[87] 동 11년 9월에는 미 1승=전 12·13문이라는 전가폭락·물가폭등의 현상이[88] 발생했다. 전문 지위의 불안에 따른 급격한 물가변동은 당연히 민간 거래질서를 와해시켜 豪富者에겐 謀利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자에겐 기본적 생존마저 위태롭게 했다.[89] 錢價의 日賤과 교역수단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전문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을 변질시켜 名目價보다는 素材價에 눈을 뜨게 해 이를 녹여 器皿으로 제작 판매하는 銷錢鑄器 행위를 만연케 했다.[90] 나아가 國外流出 현상도 조장해

對馬島商倭多以本國錢 雜於歷代錢販賣 自今禁倭人往來處 各官各浦用錢買賣[91]

와 같이 대마도 상인들이 다수의 아국 동전을 소지 판매하는 양태를 노정시켜 왜인 왕래처에서의 用錢 買賣를 금지하고 通信使의 錢文 齎去를 금단해야만 했다.[92] 또한 倭館 商人들의 潛賣 禁物 행위를 근절키 위해 禁防條件을 마련, 전문을 포함한 금·은 등의 교역을 엄금하고[93]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自今將本國銅錢賣與商倭者 依盤詰奸細律處斬 知情不告者與同罪 不能糾察當該官吏 依失於盤詰律杖一百 有能捕告者官給綿布五十匹 從之[94]

에서처럼 盤詰奸細律로 중벌에 처하는 등 전문 유출을 막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주전원료 부족에 기인한 頒布 錢文數의 제한과 燒錢鑄器, 전문의 潛出境外 현상에 따른 동전의 점차적 감소 추세는 드디어 錢貴現象을 초래해 속죄·징세상의 전문 수납을 어렵게 만

86) 「世宗實錄」 卷31, 8年 2月 壬辰條
87) 「上揭書」 卷35, 9年 1月 丙申, 司諫院左正言 成自諒等上疏曰
且錢幣 當視其貴賤而爲之緩急 已鑄四萬貫 而民間施用 纔一萬餘貫 尙且民不樂用 其直甚賤 升米至七八錢
88) 「上揭書」 卷 45, 11年 9月 丙寅條
89) 「上揭書」 卷 48, 12年 5月 甲寅條
90) 「上揭書」 卷 43, 11年 1月 丁卯條, 同14年 7月 己巳·甲戌·丁丑條, 同9月 己未·庚辰條
91) 「上揭書」 卷 44, 11年 4月 戊子, 禮曹據日本通信使報啓
92) 「上揭書」 卷 43, 11年 1月 辛未條
93) 「上揭書」 卷 44, 11年 6月 己丑條
94) 「上揭書」 卷 59, 15年 1月 己巳, 禮曹啓

들고, 나아가 동전 유통의 한계를 들어내게 했다.[95] 이러한 이면에는

今我國京都有市 各道州郡皆無市 雖有錢幣 幣者不得市焉 反以錢爲無用之物 民不興用 依中國之制 外方郡縣皆開市則錢自興矣[96]

동전을 활용할 市肆가 京都에만 있고 各道 州郡엔 전무하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어 이들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동전 흥용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세종은 본국 산물이고 銷鑄·出境의 폐단이 없는 鐵錢을 주조, 동전과 대체코자 하였다. 이에 대해 政府·六曹에서는 ① 黃喜 ; 철전주조, 동전은 時價로 환수 ② 趙啓生·崔士康 ; 철전·미·포화 겸용 ③ 沈道源 ; 미·포·동전 겸용 ④ 孟思誠·成柳·鄭淵·皇甫仁·河演 ; 五綵布 復用 ⑤ 許稠·安純·申槩·李孟畛 ; 철전주조, 承政院에서는 ① 辛引孫 ; 오종포 복용 ② 李堅基·金墩·李季疄·成念祖 ; 오종포 복용, 동전은 자연 소멸되도록 함 ③ 權採 ; 철전주조, 동전은 자연 폐기되도록 제의함으로써[97] 대체로 ① 철전 ② 오종포 ③ 철전·미·포화 ④ 미·포·동전 사용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까지 강제해 온 銅錢專用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데 비해 기존 거래수단인 포화(오종포)에 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위정자들의 이러한 인식 경향은 당시의 동전유통 부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

세종 20년에 제기된 동전 대체 화폐에 대한 논의는 동 27년에 호조가 楮貨 改用을 거론하면서 다시 전개되었다.[98] 당시 李季甸은 저화불용 배경과 동전유통 실태를 설명하면서 호조의 改錢用楮는 민심의 소동만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철전의 주조 행용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今日의 錢價가

臣所聞市裏錢文之價 米賤而錢無及時之用 則一升之米或至十三 如有和賣等事而緊切於用錢則或少至七八 米之貴賤 錢之緩急 自有其時 未可以一槩定矣(中略) 我國風俗凡諸買賣 必以綿布定價 綿布未足 充以他物 其來尙矣 不可遽革也[99]

米賤인데도 불구하고 미 1승=전 13문을, 和賣 時에는 미 1승=전 7·8문에 성립된다고 하면서 모든 매매의 성립이 綿布價에 의해 좌우되며 만약 면포가 부족할 시에는 他物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어 동전유통의 부진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문 수백관이 요구되는 큰 거래에 있어서는 동전 구득이 용이치 않고 日用에 필요한 상품이 대개 면포 수십필가에 해당하는 전

95) 「世宗實錄」 卷 59, 15 年 1月 壬申條, 同2月 丁酉條
96) 「上揭書」 卷 59, 15 年 1月 壬申, 申商曰
97) 「上揭書」 卷 80, 20 年 2月 丙寅·丁卯條
98) 「上揭書」 卷 110, 27 年 10月 壬子, 召集賢殿直提學金汶李季甸 傳旨曰 戶曹以錢幣難繼 請改用楮貨 其考古制以啓 汶等稽古制以進
99) 「上揭書」 卷 110, 27 年 10月 壬子, (李季甸)臣又謂

문 수십관이어서 錢貴狀況 下에서의 이러한 전문 소지란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100] 나아가 수속·징세상에서의 錢納이

臣又謂法之不行 自有司始 凡諸收贖與其徵闕 專用錢文載在國典 然而刑曹義禁府徵贖之時 雜用貨布 各司徵奴婢工匠之闕 或代以紙或納他物 京中始此 何禁外方乎 監司如此 何禁守令乎 此有司先擾之也[101]

와 같이 관아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物納을 행하니 만큼 민간의 전문 유통은 더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다. 결국 유명무실한 銅錢專用 대신에 楮貨復用을 택해서 유통계의 혼란을 수습치 않으면 안되었다. 동27년 楮貨可行條件을[102] 살펴보면 수속·징세·화매상에서의 楮·錢 兼用을 허용하고 있어 마치 동전의 계속적 행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所收錢文은 모두 濟用監에 보내고 있어서 도리어 전문 유통량의 점차적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것이다. 한편 市准法에 나타난 저화·동전·포화 사용의 인정은 저화전용 내지 동전전용 시에 專用貨幣 사용만을 고집한데서 파생된 각종 부작용을 체험한데서 나온 조치로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필연적인 소치라 하겠다.[103] 그러나 교역수단을 민간에 방임했다는 사실은 동전·저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장차의 주요 유통수단이 미·포화와 같은 물품화폐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은연 중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Ⅳ. 結　　論

지금까지 世宗代의 銅錢流通 始末에 기본적 관점을 두면서 용전론의 제기와 동전주조 실상 그리고 그 유통을 강제하기 위한 각종 흥용책과 민간에서의 유통 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자는 논의는 소액거래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太宗代에 발행된 저화가 당초 의도한 데로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도리어 유통계의 혼란과 침체를 초래하면서부터 이의 극복을 위한 제반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특히 저화의 名目價가 오승포 1필로 정해져 그 미만의 거래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布貨稅 징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전·소저폐 이용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는 소저폐 사용을 적극 주장한 河崙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그리고 평소 동전통용에 관심이 많았던 태종이 호조에 銅錢制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명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

100) 「世宗實錄」 卷 110, 27年 10月 壬子, (李季甸)臣又謂
101) 同　　上
102) 「世宗實錄」 卷 110, 27年 12月 癸卯條
103) 拙稿; "世宗代의 楮貨流通策", 「濟州大論文集」17, 1984. pp.16-17.

에서 저화·동전 겸행에 불만을 토로하고 차라리 동전만을 專用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기도 했지만 錢·楮 兼用에 자신감을 표명한 태종은 이를 묵살하고 동전주조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동전유통 방침이 수립되고 주전원료 수합책이 강구되어 이의 실현이 본격화되자 이제는 그에 수반된 부작용이 발생되어 敗亡寺社의 銅佛이 마구 거두어지고 저화가 장차 무용지물화될 것이라는 의혹이 생겨 시중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전유통 노력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킨 것은 자연재해였다. 당시 자연경제 하에서 천재지변은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재해를 극복하는 문제가 가장 절급한 것이었다. 大旱으로 기근이 예상되고 있어서 동전을 주조, 저화와 겸행한다는 것은 차후 과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민폐 발생을 이유로 주전사업은 즉시 중지되었다.

태종 때 시행코자 한 錢·楮 兼用策이 旱災에 따른 기근발생과 민심동요의 예상으로 말미암아 그 시행이 일단 보류된 후 유통계에서는 저화가 계속 法定貨幣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저화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 가치마저 하락하자 세종 4년 10월 錢·布 行用 구상이 제기되어 이듬해 錢·楮의 겸행으로 결정되고 10문의 중량을 1량으로, 전담관아는 司贍署로 해 朝鮮通寶를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공·사무역을 통한 日本銅 수입과 외방 廢寺 器皿의 수납, 동의 자원납부 그리고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도의 연속적 銅 輸納을 의무화시키고 楊根鑄錢所 외 蔚山과 合浦, 전라도 內廂에 주전소를 신설하며, 爐冶 增設과 鑄錢匠·助役人을 증원시켜 日課量을 정하는 등 주전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주전량을 신속히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원료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斂銅合行事目을 마련해시행하고 銅鐵産地를 개발하여 龍潭, 金海, 昌原에서의 試取를 보았다. 국가의 이러한 집중적 노력은 동 7년 1월 12,537관의 주전량을 결과하고 그 해 頒祿과 중앙·지방관아에 錢文을 급여케 하였다. 그렇지만 많지 않은 주전량으로 인해 동의 자원납부자에 대해 매 1근 당 160문의 지급원칙을 50문으로 축소 조정하고 기술적 문제에 따른 소재가치의 과중으로 동 1근에 대한 전문 160문의 등가를 130문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동에 대한 전문등가를 일단락짓자 다음달 드디어 銅錢 始用으로 들어갔다.

전문유통을 적극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대체로 동전 不用者에 대한 처벌 강화, 收贖法 改定을 통한 동전 수납, 정세상의 金納化, 和賣策 실시로 대분할수 있다. 불용자에 대한 처벌은 糾察條件을 마련해 실시했는데 동 7년 4월 동전 專用以後 보다 강화되어 1·2升의 米도 반드시 전문으로 교역케 했다. 이 조치는 민생의 빈곤화와 民怨을 촉발시켜 단계적인 완화책을 거쳐 완전히 철회되고 또한 錢價 高下에 대한 公權力 행사도 포기하여 전가의 방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시의 私經濟가 소액·소량거래에 기저하고 있고 자연경제 하에서의 민생이 극히 불안했다는 데에 연유한 것이다. 한편 수속상에서의 錢·楮 相半收納은 동전 전용이후 銅·錢文 聽願收納으로 변경되지만 실제 동전불용죄로 輕者에 가해지는 贖錢

8관은 米 20斗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루끼니 이어가기도 힘든 빈곤자에겐 커다란 짐이었다. 더우기 주전량이 유족치 못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錢貴現象**은 전문 수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동19년 수속액의 1/4을 **布貨**로 납부토록 했다. 수속 외에도 노비신공가·무녀업중세 그리고 공장세·행상세·좌고세 등에 걸친 징세의 금납화와 외방 상납물에 대한 **錢·楮 給價**, 반록시 **現物, 銅錢 給與** 등으로 전문유통 기회를 확대코자 했으나 전귀현상과 관아의 현물수납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전문의 **斂散**과 물가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화매책은 물가가 오를 때 **國庫 現物**을 방출하여 **收錢私賣**하고 **錢價**가 오를 때 그 逆으로 행하여 민생안정과 전문의 유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변함에 따라 전문 흥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되었다.

동전 유통을 위한 각종 규제행위가 민간교역의 마비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錢文始用 時** 성립되었던 미1승=전1문이, 동11년에는 12·13문으로 성립되어 전가의 폭락을 결과했다. 전문 지위의 불안에 따른 급격한 물가변동은 **豪富者**에게 모리 기회를 빈곤자에게는 생존에의 위협을 가하고 동전에 대한 인식도 변질시켜 **銷錢鑄器**와 전문의 **國外流出** 현상을 조장시켰다. 이는 전문 유통량의 점차적 감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전귀현상을 유도해 속죄·징세상의 전납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은 동20년에 **鐵錢** 通用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신료들은 **鐵錢行用, 五綜布** 채택, 철전·미·포화 겸용, 미·포·동전 겸행으로 각기의 논리를 전개했다. 이 문제는 동27년에 호조의 **楮貨復用** 제의로 다시 불붙어 **楮·錢** 兼用으로 낙착되고 수속·징세·화매상에서의 **楮·錢 收納**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납된 전문이 모두 제용감에 퇴장됨으로써 전문 유통량의 점차적 감소를 초래했고 市准法을 통한 **楮貨·銅錢 布貨使用**의 허용으로 동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은 포기되고 말았다.

Summary

The Copper Coin-Circulation Policy in the Era of King Sejong

Kwon In-kyeog

For the convenience of small business, the issue of the usage of the copper coin as the legal tender was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ho-sun dynasty. This policy of copper coin-circulation proposed in the era of King Tae-jong was received during the time of King Sejong. Eventually Cheowha (a sort of paper money) was used with the copper coin, which was the only money in common use then.

On the contrary, because of all the regulations for the copper coin-circulation, privately-based business and the business order were plunged into confusion and the price of the copper coin dropped sharply. The government of the Cho-sun dynasty made efforts several times to overcome these economic difficulties. At last, it was decided that Cheowha and the copper coin were to be used at he same time in the 2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and then payment in money as well as other goods was allowed for the national revenue. Because the copper coins were hoarded, and it was necessary to approve the use of Powha (as a sort of cloth money) for trade, the national concern for the copper coin-circulation policy began to disappear gradually.